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년월일 : 2014. 8. 8.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인천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나.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 등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내용을 통합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2. 주요내용

- 가. 국제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
- 나. 자매·우호도시의 선정 운영 (안 제4 ~ 제8조)
- 다. 해외 국제자문관, 국제고문 운영 (안 제9조~15조)
- 라.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 유치·지원 (안 제16조~21조)
- 마. 인천광역시국제도시조성촉진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22조 ~ 2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전략,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 나. 정부 간 기구 및 준정부간 기구
 - 다. 국제 비(非)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
2. “국제회의”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국제회의 중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국제교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제도시 중장기 비전과 전략
 2.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외 자매·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

4.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도시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 제4조(자매도시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제5조(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도시 간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류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서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구호 경비·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국제자문관 등 운영

제9조(구성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매 도시, 우호도시 또는 교류 필요도시 현지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외국인을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국제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관과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자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
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그 밖에 현지에서 사회적 덕망을 갖추고 존경을 받는 자

③ 시장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또는 교류 필요도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도시마다 자문관과 고문을 각각 1명씩 위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① 자문관은 주로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지원과 자문을 한다.

1. 시의 해외홍보 지원
2. 외국기관·기업·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지원
3.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4. 투자유치를 위한 알선 및 지원, 정보 제공
5. 그 밖에 경제·문화·교육·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 등 자문

② 고문은 주로 정치, 법률 분야 등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의 지원과 자문을 한다.

제11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자문관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과 고문이 국익과 제12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품위유지) ① 자문관과 고문은 직무의 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활동토론회 개최) ① 시장은 자문관과 고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활동토론회는 2년에 한번 개최하며 자문관과 고문 전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여건에 따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자문관과 고문에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활동사항 제출) ① 자문관과 고문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그 결과를 제출하고 주요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시에 통보한다.
② 그 밖에 시의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15조(활동보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자문관과 고문의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자료 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등에 대하여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과 고문을 초청한 경우 항공료와 체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자문관과 고문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지원하며 자문관과 고문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장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 유치·지원

제16조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시장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유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해당 기관의 자료를 송부 받아 유치 효과, 외교적 특수성,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다.

제17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도시조성 및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한국 내 기관, 외국 자치단체 한국 사무소 등의 유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유치심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국제도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한국 내 기관, 외국 자치단체 한국 사무소 등의 유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의결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이 유치한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한국 내 기관, 외국 자치단체 한국사무소 등에게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거나 기관·단체에게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교류촉진) 시장은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개최·유치·지원 등이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최·유치·지원의 취소) 시장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개최·유치·지원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인천광역시국제도시조성촉진위원회

제2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국제도시조성 촉진 및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조성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도시조성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 촉진 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제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제관계대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협력관,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라고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국제기구 소속 직원

4. 거주 외국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전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2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2.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 등 운영 조례

3.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자매도시 등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제자문관 등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국제자문관 및 국제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치·지원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는 이 조례에 따라 유치·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로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p>○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개정 2011.11.16]</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지원비용은 회의규모 및 회의성격 등을 고려하여 회의 주체와 협의·조정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비용추계 곤란
-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지원비용은 국제기구의 성격, 유치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사무국 등과 협의·조정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국제협력관 변 주 영